

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임종성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85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12. 23.

발 의 자 : 임종성 · 맹성규 · 송갑석
기동민 · 서영석 · 송재호
김영호 · 김영진 · 홍익표
소병훈 · 정춘숙 · 김정호
윤후덕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범위 중 간접영향권의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,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인접 지방자치단체 협의대상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과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모두 일률적으로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회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폐기물매립시설과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 구분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대상 범위를 각각 2km 이내, 300미터 이내로 규

정하고,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 의무를 배제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가.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의무 적용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,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는 300미터 이내로 구분하고, 해당 범위에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을 경우 협의 의무를 배제함(안 제9조제7항).

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7항 전단 중 “2킬로미터 이내인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, “해당 지방자치단체”를 “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0항(중전의 제9항) 전단 중 “제8항”을 “제9항”으로, “2킬로미터 이내인”을 “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제7항 후단”을 “제8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1항(중전의 제10항) 중 “제8항”을 “제9항”으로 한다.

다만,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「주택법」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: 2킬로미터 이내

2.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: 300미터 이내

⑧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가

이루어지지 아니하면 「환경분쟁 조정법」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⑩ 제3항 및 제8항 후단에 따
른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정한다.

⑪ -----제9항-----

-----.